
「산안법 제31조의2」

‘17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계획

2017.5.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‘17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계획

1

개 요

□ 목적

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제고 및 법적 책임 확보
-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교육 수요자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

- 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(등록기관의 평가)
- ❖ 산업안전·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7(교육기관 평가 등)

□ 평가대상 기관 : 104개 기관('17. 5. 15. 기준)

- (평가대상) 평가대상 기간내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등록 교육기관

□ 평가반 구성 및 평가기간

- (평가반) 공단 일선기관별 2인 1조로 구성 운영
- (평가기간) '17년 12월 중 평가 실시

□ 평가방법

- (평가표) 구조화된 평가표에 의해 객관적 평가 실시

□ 평가결과

- (결과공개) 평가결과는 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
□ 평가 지표 구성

- (지표 구성) 운영체계(600점) 및 업무성과(400점) 등 2개 기준으로 구성
 - (운영체계)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(60점, 2개 지표),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200점, 2개 지표),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140점, 2개 지표) 등 3개 항목으로 구성
 - ※ 가·감점 : 포상 및 행정처분(가감점, 2개 지표), 종합화(가점, 1개 지표)
 - (업무성과) 교육관리 및 교육의 충실성(275점, 6개 지표), 고객만족도(100점, 1개 지표), 교육후 평가 및 개선 노력(100점, 1개 지표), 수시 점검결과(125점, 2개 지표) 등 4개 항목으로 구성

□ 평가 방법

- (평가 주기) 매년 12월에 기관별 1회 정기평가 실시
 - ※ 수시평가(방문점검, 영상점검, 고객만족도)는 기존 사업계획 추진지침상의 점검 주기 및 방법대로 별도 연중 실시
- (평가 대상기간) 매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수행한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
- (평가 방법) 5등급(S~D) 절대평가(1,000점 만점)

S등급(최우수)	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불량)
900점 이상	800~899점	600~799점	400~599점	400점 미만

- 단위 평가지표 중 “0”점이 5개 이상일 경우 “D”등급 부여
- 법적 등록기준 미 충족 기관은 “D”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 행정조치

□ 세부 평가 절차

【평가반 운영】

- (평가반 구성) 지역본부 교육센터 주관으로 권역별 평가반 구성
(지역본부, 지사별 2인 1조 구성)
- (사전교육) 평가일 이전, 평가반 대상 사전교육 실시

【교육기관 평가 및 검증】

- (교육기관 자체 평가) 교육기관별로 평가결과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, 평가반 방문 평가 시 제출
- (평가반 방문 평가) 사전조사 자료 및 교육기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서류, 시설, 장비 등 현장 확인
- (결과 검증) 6개 권역별 평가반을 통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회의 개최(평가자의 착오, 과다 해석 등에 대한 점수 보정)

【이의신청 및 확정】

- (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) 평가지표별 점수, 총점, 등급 등 평가결과 검증회의 후 7일 이내 대상 교육기관별 공문 발송
 -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신청 접수

※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10일 이내 재확인 실시
(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경미한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평가<외부위원 제외 최초 평가반에서 평가> 실시)

- (결과 확정)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

【확정 평가결과 통보】

- (확정 통보) 평가결과 확정 후 5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별 확정 평

가결과를 공문으로 발송

- 통보내용 : 평가결과 총점, 등급 및 평가결과 공개관련 안내 등

□ 평가결과 활용

- (결과 공개) 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등급 공개
- (결과 활용) 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취약계층 비용지원사업의 참여배제 및 제공물량 차등 등의 기준으로 활용

□ 향후 주요 추진 일정 (예정)

- ('17.5월) 평가지표 사전공개
 - 공단 홈페이지 및 K2B 시스템(공지사항) 등을 통해 평가지표 세부항목, 배점 및 평가표 공개
- ('17.11월) 평가일정 사전 공고(평가실시 30일 전)
 -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문 발송하여 평가일정 공고
- ('17.12월) 평가 실시
 - 교육기관별 평가반 방문평가
- ('17.12월) 최종 평가 결과 공개
 -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문 발송하여 평가일정 공고

덧붙임 :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표